

여러분, 시험 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혹시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좋은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정진하셔서
이후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총평

“합격노트만으로 전체 20 문제 모두 커버되어 100점 가능”

이번 지방직 9급은 전형적인 지문 위주로 쉽게 출제되었다.
합격노트만으로, 전체 20문제 중 20문제가 모두 커버되었으므로
합격노트만 충실히 소화해도 100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은 22년 간행 최신판례가 출제되지 않아서, 3월에 진행한 최판특강 프린트를 못 보고
합격노트만 본 경우조차도 만점이 가능했다)

지문단위로, 합격노트만으로 전체 80개 지문 중 79개 지문이 커버되었다.
(커버 안 된 지문은 14번 4지문인데, 이 문제는 정답 지문이 뻔하였으므로 4지문을 알지 못해도
정답 고르는 데 지장은 없었다.)

본 해설지에서는 복습의 편의를 위해 합격노트 기재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단 이해의 편의를 위해 7번 1지문 해설 말미에는 합격노트 기재 외의 추가설명을 부가했고, 이
부분에는 “ * ” 표시를 붙임)
(이 해설지의 해설 자체가 14번 4지문을 제외하고는 합격노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므로, 시간관
계상 합격노트의 해당면수 표기는 생략하였다.)

-
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 ②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중
- ①O ②O ③X ④O 행정의 자동결정
-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투입하여 행정을 자동화하여 수행하는 것
ex.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로 학교배정

-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자동결정의 특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자동결정도 행정행위(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법적 한계를 지켜야)
- 자동결정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행정규칙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③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 ④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중

①O

- 어떠한 사안이 국회의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 :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 공개토론의 필요성, 상충 이익간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

②X

판례

[1]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2016두32992)

③O

판례

[의한 vs 근거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 가능(2003헌마289)

④O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답 ②

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중

①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헌법에 규정 있어 법규명령O(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포함)
- 구체적 규범통제: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법원이 당해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②O

- 법규명령은 일반적, 추상적이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X
- 그러나 법규명령이 **집행행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분적 법규명령) **항고소송 대상O**

③O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는 **각급 법원**
-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은 법규명령을 뜻함

④X

판례
추상적 법령 제정여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91누11261) [주의] **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X**

답 ④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③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④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중

①0

판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에 의해 당연 발생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처분이 아님(2005다15482)

②0

판례

[기관위임 vs 자치] [1]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별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임 [형사처벌 가능 = 형벌능력O]
[2] **항만순찰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상 양별규정에 따른 처벌대상X(2008도6530)

③0

판례

[게임물] 현재판례

[1]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원칙 /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침해 소지가 큰 즉시강제는 예외적인 강제수단
[2]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를 요함 / 행정상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3] 즉시강제는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4] 영장주의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성이 없음에도 즉시강제를 인정하는 법률은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
[5]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게 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영장없는 수거를 인정해도 영장주의 위배X(2000헌가12)

④X 공매통지를 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경우 : 공매처분은 위법하나, 절차의 하자이므로 무효는 아님

답 ④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 ②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중

①X

판례

[면직되면 사표 못물러]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 있을 때까지 가능 ⇨ 면직처분 이후는 철회·취소 불가(99두9971) / 다만 의원면직처분 이전이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철회 불가(92누16942)

②O

판례

[이것저것X, 거주목적만!] [1]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수리여부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됨. 거주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님(2008두10997)

③X

- 보완요구의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 보완요구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절차적 흠결 / 단 실체적 요건이라도 신청인의 단순 착오,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것이면 보완요구가 가능하며, 보완요구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

④X

- 공법관계도 도달주의가 원칙 / 발신인을 위해 발신주의 규정 둔 경우 예외적 발신주의

답 ②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 ③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중

①O

- 제3자효(대세효):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대세효에 관한 명문규정 있음) [주의] 그러나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님(20국가9)

②X

판례

[기속력 vs 기판력] [1]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인용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움 / '기판력'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 소송물이 전소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 후소에서 전소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었어도 종전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 처분청은 종전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인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2015두48235)

③O

- 취소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처분이 위법한 경우) 인용판결(취소판결)이 원칙 / 그러나 처분이 위법하다 라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사정판결

④O

판례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절차,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해 미침 /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로 취소된 종전 과세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안됨 (85누231)

답 ②

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다.
- ②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행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중

①O

- 행정상 사실행위: 법적 효과가 아니라 사실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행위
- 행정지도: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지도, 권고, 조언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법적 효과 없음)
- (대집행의) 실행: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O(수인하명(대집행 수인의무)이 결합된 합성행위로 보기도) / 실력행사(실력에 의한 저항배제)의 허용여부: 판례 없음(실무상 대집행에 저항하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 즉시강제: 권력적 사실행위 /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 대물적 즉시강제의 예: 위해식품 수거 / 미승인 마약류 폐기 / 불법비디오, 불법게임물 수거, 폐기
 * 위해식품 수거, 게임물 수거 ⇨ 즉시강제 ⇨ 사실행위 ⇨ 그렇다면 폐기물 수거도 사실행위

②O

판례
 행정청이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행위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96누433)

③O

판례

영치품(티셔츠) 사용신청 불허처분 이후 원고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권리의익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고 진주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불허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 있음(2007두13203)

④X

판례

교도소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2005헌마277)

답 ④

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 ②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③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중

①X

판례

[농지법]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 적용 ⇨ 항고소송 대상X / 농지법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 이와 다른 불복절차 불허 ⇨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하며 행정심판·행정소송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 아닌 기각재결 하면서 행정소송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해도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발생X(2018두42955)

②O

판례

[건물 점유자] [1]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음
[2]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불필요
[3]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법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2016다213916)

③O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답 ①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④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중

①O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O

제51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X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는 자발적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처벌됨)**

④O

판례

[1]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 없음**

[2]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행정기관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2006다18228)

답 ③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자를 다룰 수 없다.
- ④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중

①O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 : 승계O /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 : 승계X**
 [주의]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독립하여 별개라도 후행처분 무효

②X

판례

[개별 과세]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음**

[2]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자체를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위법여부를 **다룰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93누8542)

③O 하자 승계 부정 판례

- **철거명령과 강제집행**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납세고지)**

④O

판례

[표준 수용]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은 서로 독립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나,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기에 기초한 수용재결등 후행 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 그 자체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위법여부를 다룰 수 있고,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2007두13845)

답 ②

12.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 ②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③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중

①O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②O

판례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대등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2019다277133)

③O

판례

[법관 명퇴수당] [1]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게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어, 위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 권리를** 가짐 / 위 법관이 이미 수령한 수당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함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라도, 그 의사표시는 명예퇴직수당액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지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 /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한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해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해야

[2] 원고가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했어도 어차피 부적법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은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해야(2013두14863)

④X

- **가처분**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집행정지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X /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이 준용**

[비교] 항고소송에는 가처분규정 준용X

답 ④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중
①X

판례

[기관위임]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자체의 산하 행정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므로 사무귀속주체가 달라지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그 관리권한이 지방경찰청장(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배상책임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권한을 위임한 지자체장이 소속된 지자체가 부담하나,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99다11120)

②O

판례

[불복절차 없으면] [1]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등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시정을 구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국가배상 받을 수 없음
[2]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불이익·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청구 가능

[현재재판관 실수] [3] 현재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해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 인정됨
[4] 설령 본안판단을 해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도, 현재 재판관이 일자계산을 정확히 하여 본안판단을 할 것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인의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가치가 있어,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확정(99다24218)

③O

- 국가배상법 제5조상 배상책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사무귀속주체(영조물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
-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에 대해 선택적 청구 가능
- 이 경우 판례는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 있는 자는 사무귀속주체(영조물 설치관리자)라고 보나, /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④O

판례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인지 여부(적극) 및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원심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가 군인연금법 제31조가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의 조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군인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보상금(군인연금법 제31조)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에게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군인연금법 제31조의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관계 및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 36691 판결).

답 ①

15.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③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가 되며,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중

①X

- 행정소송법 제26조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 변론주의 원칙에 보충적으로 직권심리주의(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를 가미하는 규정 (가미된 한도에서 주장책임이 완화될 여지 있음)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모든 사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기록상 현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음

②O

판례

[처분시 기준 / 변종시까지 제출]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는 것은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처분 후 법령 개폐, 사실상태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92누 19033)

③O

-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직권X) 결정으로 재결청에게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행정소송법 제25조)

④O

판례
[1]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요건을 충족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 '요건 못 갖췄다는 판단',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 ⇨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은 판단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정이 혼인 당사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피고 행정청이 파악하기 곤란하고 원고는 상대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2018두66869)

답 ①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③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중

①O

판례
[1] 물을 사용해 사업하는 지위가 독립해 재산권으로 평가되는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공동법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점용의 권리처럼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 ⇨ 공동법상 손실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독립된 재산적 권리)(2014두11601)

②O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집행부정지 :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당해 공익사업의 진행 및 토지수용은 정지X

③O

판례
[1]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 ⇨ 일정절차 거칠 것을 조건으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2009두1051)

④X

판례

어떤 보상항목이 공토법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손실보상대상 아니라고 잘못 재결 ⇨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 할 것X,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 소송 해야(2018두227)

답 ④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② 甲이 丙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중

①X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로 대별
-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의 변경재결은 **적극적 변경**(원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변경)도 가능
- 취소재결과 변경재결은 형성적 재결 / 변경명령재결은 이행적 재결

②X

판례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원처분 당부와는 상관없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93누16901)

③O

-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
-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처분청(피청구인)은 인용재결에 불복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그러나 기각재결, 각하재결은 기속력이 없음 / 처분청은 기각재결 후에도 대상처분을 직권취소(철회), 변경 가능

④X

- 불이익변경금지 :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함(행정심판법에 명문규정 있음)

답 ③

18.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③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중
①O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O

판례

[성질상] 행정절차법은 침해적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나, 이는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2000두3337)

③X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제출 규정은 당사자등에게 적용되는바, 당사자등은 직접 상대방과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임. 따라서 **원고적격 인정되는 제3자(이웃주민, 경원자, 경업자)라도 행정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은 이상,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고, 의견제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처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다(X)

④O

판례

처분하면서 당사자가 근거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 제시 ⇨ 처분의 근거·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처분이 위법X(2016두64975)

답 ③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

①O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②X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O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O

제44조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제45조 [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답 ②

20.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②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④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중
①0

판례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 등')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 / 조합 등의 사업내용 등이 사업자단체 설립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짐(2013두635)

②0

판례

[설립인가 다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은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중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야 하고,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음(2011두11112)

③X

판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따라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는 하자가 없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하나, 인가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해야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곧바로 인가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해서는 안됨(2020두48031)

④0

판례

[조합 없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임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 대상인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님(2011두19994)

답 ③